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8 선고 2021나33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1. 8 선고 2021나3362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335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변론종결 2022. 9. 20.

판결선고 2022. 11. 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335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L생] 사이에 2020. 11. 2.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대신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1억 원을 상속재산인 강릉시 E 지상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채 계속 그곳에서 거주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이르러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위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주택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주택이

매각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점,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도 하였던 점에 더하여 피고와 C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채권양수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판사 임세영